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4635
결재일자	2016.2.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자치행정담당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	부구청장	
최종삼	이철암	박성도	손정수	전결 02/26 김병환	
협 조	홍보전산과장 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		유인욱 홍동석 이경환		

##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

2016. 2.

**행 정 국**  
**자 치 행 정 과**

#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

제20대 국회의원선거(4.13)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일정에 따른 선거관리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I

### 선거 개요

- 선거일 : 2016. 4. 13.(수) 06:00~18:00
- 선거기간 : 2016. 3. 31.~ 4. 13.(14일간)
  -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
- 선출인원 : 2명 ※ 전국 300명(지역 246석, 비례 54석 예상)
- 주요 선거사무 일정
  - 예비후보자 등록(선거일전 120일부터) ..... '15.12.15.~
  -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(선거일전 49일부터 10일간) ... '16.02.24.~03.04.
  -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(선거일전 30일) ..... '16.03.13.
  - 선거인명부 작성(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) ..... '16.03.22.~03.26.
  - 후보자등록(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) ..... '16.03.24.~03.25.
  - 선거인명부 확정(선거일전 12일) ..... '16.04.01.
  - 투표안내문·선거공보 발송(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) ..... '16.04.03.
  - 선상투표(선거일전 8일부터) ..... '16.04.05.~04.08.
  - 사전투표소 투표(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) ..... '16.04.08.~04.09.
  - 투표 및 개표 ..... '16.04.13.

## 투표관리 기본현황

- 선거인수 : 총 385,241명 (※ 2015.10.31.기준)

선거구명	투표구수	인구수	세대수	19세이상 주민수
총계	96	462,611	192,908	385,241
갑선거구	49	243,275	102,766	201,548
을선거구	47	219,336	90,142	183,693

- 개표소수 : 1개소 (※고대부고 강당 예정)
- 선거구별 현황

구분	동명	비고
갑선거구	성북동, 삼선동, 동선동, 돈암2동, 안암동, 보문동, 정릉1동, 정릉2동, 정릉3동, 정릉4동, 길음1동	11개동
을선거구	돈암1동, 길음2동, 종암동, 월곡1동, 월곡2동, 장위1동, 장위2동, 장위3동, 석관동	9개동

## II

### 추진방향

####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

- 선거사무 인력 확보 및 선거사무 실무자 교육
- 선거관리 각종 기본통계 정비 철저 등

####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및 운영

- 공직선거·재외선거 업무편람 교육 및 선거인명부 등 작성
-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

#### 성실한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참여 등 홍보활동 전개

- 전광판, 시·구 홈페이지,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 등 공명선거 홍보

####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협조

- 투·개표사무원 및 불법선거 감시단원 등 인력 지원·협조
- 공명선거 홍보용 차량 및 투표소의 집기 등 장비 지원·협조

## 《 제20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 》

주요항목	19대 총선('12.4.11)	20대 총선('16.4.13)
사전투표제 도입	- 부재자투표	- 사전투표제 도입(전국 어디서나) ※ '13.1.1.부터 적용
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변경	-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	-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
집행유예자·수형자 선거권부여	-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제한	- 일반범 집행유예자 선거권부여 ※ '14.6.4. 지방선거부터 적용 - 1년 미만 수형자 선거권 부여 ※ '16.1.1.부터 적용
선상부재자투표 도입	- 미 규정 ※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적용	- 선박에 승선(예정)하고 있는 선원 ※ '16.1.1.부터 적용
사전투표소 선거전용 통신망 구축	- 규정없음	-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를 위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의무화

### Ⅲ 선거관리예산

####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

- 대통령, 국회의원 선거 : 국가
- 지방의회의원, 단체장 선거 : 당해 지방자치단체
- 교 육 감, 교 육 의 원 : 당해 교육청

#### 국비 배정내역

- 배 정 액 : 총 50,102천원
- 배정내역

구 분	계	일용인부임	관서운영비	여 비	업무추진비
계	50,102천원	6,323	37,849	3,247	2,683

※ 배정기준(서울시)

- 일용인부임, 임차료 : 동수 100%
- 공공요금 : 인구수 100%
- 일반수용비, 특근매식비, 국내여비, 업무추진비 : 동수 50%, 투표구수 50%

## IV

## 세부 추진계획

### 1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

#### □ 『선거사무지원반』 구성·운영

- 운영기간 : 2. 26.~ 4. 15.(50일간)
- 운영장소 : 성북배움터(3층)
  - 선거사무(2241-6484~8), 주민전산(2241-6743)
- 운영인원
  - 추진반장 : 자치행정팀장
  - 추진반원 : 4명(자치행정과 직원)
- 운영체계 : 행정자치부 ↔ 시 지원반 ↔ 구 지원반 ↔ 동주민센터  
(시선관위 협조지원) (구선관위 협조지원)
- 주요업무
  -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활동 지원
  - 선거관련 사건·사고 등 파악 및 종합관리
  -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·지원 등
  - 사전투표일(4.8.~4.9), 투표일(4.13.)에는 「투·개표 지원상황실」로 전환

#### □ 선거사무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

- 행정자치부 주관 교육
  - 일시/장소 : 2. 17.(수) 10:00~18:00 / 세종대 대양홀
  - 대 상 : 구·동 선거 및 전산담당 공무원 44명
  - 주요내용 :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 제반사항 등
- 구 주관 교육
  - 일시/장소 : 3. 7.(월) 10:00, 14:00 / 구청 다목적홀
  - 대 상 : 간사, 서기, 투표관리관 등 선거관련 공무원
  - 주요내용 : 선거인명부 작성, 투표사무처리 요령 등

## 2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

### 주민등록 일제정리 ※ 별도 세부계획에 의거 추진

- 기 간 : 1. 15.(금) ~ 3. 16.(수) (62일간)
- 추진기관 : 동주민센터
- 중점 정리내용
  -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
  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
  -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

### 『법정선거서식』 제작 및 배부

- 제작·배포 : 3월 초 ※ 시 일괄제작·배부
- 제작대상 : 선거인명부 표지 등 법정선거서식
  -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,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공고문 등 26종
  - 기타 서식은 자체제작·배부

###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

- 작성기간 : 2. 24. ~ 3. 4. (10일간)
- 대 상 자 :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(2.13)현재,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
- 명부 작성상황 통보
  - 행정자치부,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및 작성상황 송부

### ‘선거권 없는 자’ 조사·정리

- 추진기간 : 3월 ~ 4월(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일까지)
- 대 상 :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‘선거권 없는 자’
- 추진방법 : 주민등록지 ↔ 등록기준지
  - 주민등록지 : ‘선거권이 없는자’ 명단 작성 후 등록기준지로 확인 요청
  - 등록기준지 :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대조, ‘선거권 없는 자’ 주민등록지로 통보

##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·선상투표 신고자 처리

- 추진기간 : 3. 22. ~ 3. 26. (5일간)
- 대 상 자 :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
- 주요내용
  - 선거인명부 작성
  -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신고인명부 작성
  -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신고인명부 작성
- 명부 작성상황 통보
  -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및 작성상황 송부
- 기타사항
  - 투표·거소투표용지 4.3(일)까지, 선상투표용지 4.4(월)까지 발송 조치

##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인 조치

- 열람기간
  -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: 3. 5. ~ 3. 9.(5일간)
  - 국내선거인 명부 : 3.27. ~ 3.29.(3일간)
- 열람장소 : 동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
- 열람내용 : 선거인명부 등재여부, 등재번호, 투표소 위치 등
- 이의신청의 처리 : 구술 또는 서면신청에 의거 다음날까지 심사·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

## 선거인명부 확정

- 확 정 일 : 4. 1.(금)
- 명부 확정상황 통보
  -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
- 기타사항
  -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구 홈페이지 내 등재여부·등재번호·투표소 위치 확인토록 조치(4.2.~4.13. 18시까지)

## □ 법정선거업무 추진상황 점검

- 기 간 : 3월 ~ 4월
- 점 검 반 : 선거사무지원반장 외 5명
- 점검대상 : 20개동
- 주요 점검내용
  - 선거인명부 작성상황, 열람·이의신청 상황
  -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 및 전산 운영장비 등 장애·보안 관리
  - 공명선거·투표참여 홍보 등 선거업무 추진 상황 등

## □ 사전투표소 투표

- 투표기간 : 4. 8.(목) ~ 4. 9.(금) (2일간)
- 투표시간 : 06:00 ~ 18:00
- 투 표 소 : 동주민센터별 1개소
- 기타사항
  -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 가능
  -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를 위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의무화

## □ 투 · 개 표

- 투 표 일 : 4. 13.(수)
- 투표시간 : 06:00 ~ 18:00
-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
  -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 설치, 선거일전 10일까지 명칭과 소재지 공고
- 투표소(사전투표소 포함) 확보 시 유의사항 준수
  - 투표구안의 관공서, 공공기관·단체의 사무소, 주민회관,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 확보
  - 장애인, 노인 등의 불편 최소화 조치
    - 가능한 1층 투표소 최대한 확보, 투표소 안내도우미 배치
    - 현장점검을 통해 임시경사로 설치, 장애인 편의도모
- 개표시간 :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 실시



○ 투·개표소 안전관리 철저

- 인화물질, 폭발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·안전점검 실시
- 선거당일 경찰·소방공무원의 투표소 순찰 및 개표소 배치 협조
-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서장에게 원조 요청

투·개표 지원 상황실 설치·운영

- 운영기간 : 4. 13.(수) 05:00 ~ 개표 종료시까지
- 운영장소 : 구청 6층 미래기획실
- 운영체계 : 행정자치부 ↔ 시 ↔ 구 ↔ 동주민센터
- 주요기능 : 투·개표 진행상황 관리, 사건사고 처리 등

**3**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

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투표참여 홍보

-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선거법 교육 : 3월중
-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·방법 활용
  - 구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·운영
  - 선관위,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

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제 적극 홍보

-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공명선거 참여 및 신고 활성화
  - 구 홈페이지, 전광판, 지역신문·방송, 반상회보 등 활용
- 소속직원의 불법선거 감시·제보 안내
  - 공직내부 선거관여 감시 및 제보 분위기 조성, 선거중립 철저 확립

선거개입 오해소지 행위 사전방지

- 대내외 행사, 홍보물 제작·배포 등 각종 활동 시 선거법 위반 또는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
- 소속기관, 유관단체, 통·반장 등의 선거중립 관리 감독 철저

## 4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

### 인력지원 협조

- 투표구의 투표관리관 및洞위원회 간사·서기 등 투표사무종사원
- 투·개표사무 종사원,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구성 요원
- 선전벽보 첩부, 투표안내문 발송 인력 등

### 시설·장소지원 협조

- 각종 교육·회의장소 및 후보자 선전물 발송작업 장소제공
- 투표소·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등

### 장비지원 협조

-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검색용 PC 지원
- 공명선거 홍보용 차량 지원 등

### 각종 지원사항의 정확한 관리

- 인력·시설·장비 등의 제반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

## IV

## 행정사항

### 전부서

- 사전투표사무원 추천 및 투·개표사무원 근무 협조
-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철저
- 선거사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 협조
- 선거일정을 감안하여 동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회의 및 차출 자제

## 전 동

-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 추진 철저
- 투표소 관리 및 안내 철저
- 사전투표 관리 및 진행 철저

## 감사담당관

- 공명선거 추진 감찰 운영

## 행정지원과

- 선거사무지원반 사무실 사용 협조 : 3층 배움터
- 선거 담당자 등 교육, 회의 시 각종 시설 대관 우선 협조

## 홍보전산과

- 공명선거, 선거일정 및 투표참여 홍보
- 선거사무지원반 인터넷전화 랜망 구축

붙임 : 1.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1부  
2. 각종 제출서식 1부.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기준일
'15. 11. 15. 부터 '16. 2. 13. 까지	일 토	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	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
12. 15.부터	화	예비후보자등록 신청	선거일 전 120일부터
'16. 1. 14. 까지	목	각급선관위 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	선거일전 90일까지
		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	선거일전 90일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전)까지
1. 14.부터 4. 13.까지	목 수	의정활동 보고 금지	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
2. 13.부터 4. 13.까지	토 수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
2. 24.부터 3. 4.까지	수 금	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	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
3. 14.에	월	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	선거일전 30일에
3. 22.부터 3. 26.까지	화 토	선거인명부 작성	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
		거소·선상투표신고 및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	
		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	
3. 24.부터 3. 25.까지	목 금	후보자등록 신청(매일 오전9시 ~ 오후6시까지)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
3. 30.부터 4. 4.까지	수 월	재외투표소 투표(매일 오전8시 ~ 오후5시까지)	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
3. 30.까지	수	선거벽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
3. 31.	목	선거기간 개시일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
4. 1.까지	금	선거공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
		선거벽보 첩부	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
4. 1.에	금	선거인명부 확정	선거일전 12일에
4. 3.까지	일	거소투표용지 발송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	선거일전 10일까지
		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	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
4. 5.부터 4. 8.까지	화 금	선상투표	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
4. 8.부터 4. 9.까지	금 토	사전투표소 투표 (매일 오전 6시~오후 6시까지)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
4. 13.	수	투 표 (오전6시 ~ 오후6시까지)	선 거 일
		개 표 (투표종료후 즉시)	

[ 서식 1 ] 사건·사고 발생 보고(즉보)

수 신 : 자치행정과장

발 신 : ○○○동장

제 목 : 제20대 국회의원선거(4.13) 관련 사건(사고) 발생보고

---

1. 사건(사고) 개요

- 일시, 장소, 사고경위(내용), 조치사항

2. 조치계획

- 자치단체, 검·경,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

〔 서식 2 〕 미담·수범사례, 특이사항 등 보고(즉보)

수 신 : 자치행정과장

발 신 : ○○○동장

제 목 : 제20대 국회의원선거(4.13) 관련 미담(특이사항) 사례 보고

---

- 일시, 장소,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 작성

### [ 서식 3 ]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(2.24, 3.4)

(단위 : 명)

시·도명	구·시·군·명	① 공관명부 접수자			수정에 의한		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				④인구수 (연월일 현재)	인구수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(%)	비고
		계	등재자	미등재자	증	감	구분	계	②공관접수 등재자	③구·시·군 접수 등재자			
							계						
							남						
							여						

주: 1.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- ①란은 당초 통보된 공관명부 접수자의 수를 기재한다.
-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공관명부 등재자의 수를 기재한다.
-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 중 해당 구·시·군의 장이 접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한다.
- ④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.

2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'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'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.

### [ 서식 4 ]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(3.14)

(단위 : 명)

①접수 기관명	②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		③직권수정에 의한 감	④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		⑤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	⑥인구수 (연월일 현재)	인구수대비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(%)	비고
	계			증	감				
	계								
	남								
	여								

주: 1.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- ①란은 "접수기관명"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"접수기관"의 순에 따라 기재한다.
  -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서상의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.
  -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전까지 사망·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  - ④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·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.
  -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서 ③, 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.
  - ⑥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.
2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'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'·'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'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.

## [ 서식 5 ] 선거인명부 작성상황(3.22)

### ○ 총괄

(단위 : 명)

투표구명	인 구 수 ( '16년 3월 22현재)	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			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(%)	세 대 수	비 고
		계	남	여			

주 : 1.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.

- "인구수 ·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· 세대수"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 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, ( 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(,)로 구분한다.
-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
## [ 서식 6 ]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(3.27)

(단위 : 명)

투표구명	인 구 수 ( 년 월 일 현재)	선 거 인 수 (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현재)			확정된 (거소투표) · (선상투표) 신고 인수			인구수에 대한 (거소 투표) · (선상투표) 신고인수 비율(%)	선거인수에 대한 (거 소투표) · (선상투 표)신고인수 비율(%)	비 고
		계	남	여	계	남	여			

주: 1.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.

- "인구수 · 선거인수 · 확정된 (거소투표) · (선상투표)신고인수"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 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.
-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-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.



## [ 서식 7 ] 투표소 공고상황(4.3까지)

### ○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

구 분		계	설 치 장 소					
			학교시설	관공서	주민회관	공공·시설	민간시설	기타
투표소		개소						
장애인 편의	승강기 설치	개소						
	안내 도우미	명						

※ 기타 :

### ○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

구 분		계	건물 층수별				※임차 투표소수
			지하	1층	2층	3층이상	
투표소		개소					
장애인 편의	승강기 설치	개소					
	안내 도우미	명					

### ○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 상황

명 칭	소재지(시설명)	설치·운영기간(부터~까지)

## [ 서식 8 ] 선거인명부 확정상황(4.1)

### ○ 총괄

(단위 : 명)

투표구명	① 인구수 (년 월 일 현재)	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	③ 직권수정에 의한		④ 이의·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		⑤ 확정된 선거인수	⑥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	⑦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	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(%)	⑧ 세대수	비고
			감	증	감	증						
		계										
		남										
		여										

주 : 1.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-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.
-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(거소·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)를 기재한다.
-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·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-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·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-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·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.
-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 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(⑥⑦란 제외)하되, ( 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쉽표(.)로 구분한다.
-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-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<선거인명부수정상황>과 별지 제2호 <선거인명부확정내역>을 작성·첨부한다.

### ○ 선거인명부확정내역

(단위 : 명)

투표구명	확정된 선거인수 (①②③)	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·거주불명자 선거인수					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					③ 외국인 선거인수	비고	
		계	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	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	계	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	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			
		계					계							
		남					남							
		여					여							

주 :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- ①란은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,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(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)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②란은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,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(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)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(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)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.
-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
**[ 서식 9 ] 투·개표사무원 위촉·공고상황(4.10까지)**

○ (사전투표)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

계	국가 공무원	지방 공무원	교직원	금융기 관 직	정부투자 기관직원	지방공사· 공단직원	일반인
명							

○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

계	국가 공무원	지방 공무원	교직원	금융기 관 직	정부투자 기관직원	지방공사· 공단직원	일반인
명							

**[ 서식 10 ] 투·개표소 설치상황(4.12까지)**

구 분	합 계	장 소 별					
		학교시설	관공서	주민회관	공공시설	민간시 설	기타
투표소(개소)							
개표소(개소)							

※ 기타 :